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4. 9. 4(수) 10:00

##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# 검토보고서

#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(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)



## 행정재경위원회

전문위원

#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## 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565호
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
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#### 2. 제안이유

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(2023. 5. 16. 공포 및 2024. 5. 17. 시행)에 따라 "국가유산(구 문화재)"에 대한 용어 및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가.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

- 1) "문화재" → "국가유산"(안 제1조부터 제3조)
- 2) "문화재" → "문화유산"(안 제4조)
- 3) "문화재청장" → "국가유산청장"(안 제4조)
- 4) "문화재보호구역" → "국가유산 보호구역"(안 제5조)

#### 나. 인용조문 정비

- 1) 「문화재보호법」→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안 제4조)
- 2) 「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」→ 「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(안 제5조)

### 4. 관계법령

○「국가유산기본법」제1조 및 제3조

#### 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(2023. 5. 16. 공포 및 2024. 5. 17. 시행)에 따라 "국가 유산(구 문화재)"에 대한 용어 및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# ※ 국가유산 체제 전환

-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'재(財)'를 과거·현재·미래가치를 포함 하는 '유산(遺産)'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
- 유네스코 유산체계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분류체계 재정립

현행 용어				
	유형문화재			
문화재	민속문화재			
<b>문화재보호법</b> 」	기념물	사적지 등		
		명승, 천연기념물 등		
	무형문화재			

변경 용	관련법	
<b>국가유산</b> 「국가유산기본법」	문화유산	「문화유산법」(개정)
	자연유산	「자연유산법」(제정)
	무형유산	「무형유산법」(개정)

#### ○ 주요개정사항

- 명칭변경 : "문화재" → "국가유산" 또는 "문화유산"으로 변경
- 인용조문 현행화
  - 「문화재보호법」→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  - ▶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→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
  - 「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」→「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

○ 조례 정비대상 : 총 5건

연번	구분	자치법규명	조항	개정내용	소관부서
1		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	제2조	· 문화재 → 국가유산	민원감사담당관
2		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	제2조	· 문화재 → 국가유산	부동산정보과
3		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	별표 1	· 문화재 → 국가유산	도 시 계 획 과
4 조례 (5)	<b>.</b>	자연환경보전 조례	제13조	・「문화재보호법」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・ 문화재 → 문화유산	공 원 녹 지 과
			제14조	・「문화재보호법」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・ 문화재청장 → 국가유산청장	
5		구세 감면 조례	제2조	<ul> <li>문화재 → 국가유산</li> <li>「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」→</li> <li>「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</li> <li>문화재보호구역 → 국가유산 보호구역</li> </ul>	세 무 1 과

붙임: 관계법령 1부. 끝.

#### 관계법령

### 국가유산기본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20309호, 2024. 2. 13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, 국가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 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 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국가유산"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·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·자연유산·무형유산을 말한다.
- 2. "문화유산"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,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.
- 3. "자연유산"이란 동물·식물·지형·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 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.
- 4. "무형유산"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, 공동체·집단과 역사 ·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.